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하여 방문 요청을 드렸으나,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미이행(연락두절) 및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,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21. 6. 10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
2.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」 제12조제4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, 같은법 제29조제3항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, 같은법 제15조제3항, 같은법 제21조제1항

3. 공고대상자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사유	처분내용		
김0식	1969. 12. 25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에도 방문 불이행	-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-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 등	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105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 6. 10. ~ 2021. 6. 24.

※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.

(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: 2021. 6. 25. / 의견제출기한 :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(2021. 7. 4.))

5. 의견제출 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(2층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08-8230-0546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6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황서경(Tel. 054-440-20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